

# 교원인사 규정

##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1.11.29.		16	2024.7.29	
2	2012.10.31.		17	2024.11.4	
3	2013.7.26.		18		
4	2013.12.23.		19		
5	2015.2.3.		20		
6	2016.1.12		21		
7	2016.10.28		22		
8	2017. 3. 1		23		
9	2017. 11. 2		24		
10	2018. 3 1		25		
11	2018.10.22		26		
12	2019.8.26		27		
13	2019.12.27		28		
14	2021.4.26		29		
15	2023.5.8		30		

# 교원인사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 종류 등)**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8.26>

②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 14조에서 강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2.3.,2019.8.26>

③ 정년트랙교원이라 함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교원을 말하며, 정년트랙교원 중 학내 실용학문 진작과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3.>

④ 비정년트랙교원이라 함은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으로서의 임용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교원을 말하며,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단, 비정년트랙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1.2>

⑤ 삭제 <2016.10.28>

⑥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개정 2012.10.31.>

⑦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9.8.26>

⑧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자로서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원 등으로 한다. <신설 2019.8.26>

**제3조 (적용)** ① 이 규정은 본교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11.29., 2015.2.3.>

② 본 규정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1.29., 2015.2.3., 2019.8.26>

**제4조 (소속)** ① 전임교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각 학과, 학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6>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임교원을 교내 기관에 소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③ 총장은 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과, 학부에 겸하여 소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26.>

**제5조 (세칙)**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임 용

### 제 1 절 신규임용

**제6조 (임면)** ① 전임교원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제41조에 의거 임면하며, 동조 제3항에 의거 계약으로 임용한다.<개정 2013.12.23.,2019.8.26>

② 임용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 (임용자격)** ①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은 본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경력 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원인사 위원회에서 교육자적 자질과 학문연구 업적 등을 심의하여,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임용한다.<개정 2012.10.31. 2015.2.3.,2019.8.26>

1. 박사학위 소지자(명예박사학위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본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연구·교육 년 수에 준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한다고 인정된 자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
2. 건강 상태가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임용 후에도 본교 이외의 다른 직장에 전임으로 재직하고자 하는 자

③ 특별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원 특별 채용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9.8.26>

**제8조 (임용시기)** 전임교원의 임용은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임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8.26>

**제9조 (공개채용의 원칙)**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외의 석학, 종견학자, 기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8.26>

**제10조 (임용계획, 심사 절차 및 계약체결)**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계획 및 심사절차, 특별 채용 절차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6>

② 총장은 임용일자, 직위, 계약기간, 보수, 근무 등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5.2.3.>

**제11조 (임용기간)** ①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을 기한부로 계약 임용하되, 계속 임용 시에는 본 규정 제17조에 정한 기간에 따라 재계약 임용(이하 재임용이라 한다.)한다. <개정 2009.2.2., 2012.10.31., 2015.2.3., 2017.3.1.,2019.8.26>

②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은 최초 계약임용 기간 내에는 승진, 승호봉 또는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09.2.2., 2012.10.31.,2017.3.1.,2019.8.26>

③ 특별 채용되는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교원특별채용내규에 따른다.<개정.,2019.8.26>

④ <삭제 2015.2.3.>

⑤ <삭제 2011.10.28.>

**제12조 (임용직위의 기준)** 신규임용된 전임교원 임용직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2.3.,2019.8.26>

1. 부교수<개정 2018.3.1>

다음 각 목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가. 정규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경력이 9년 이상 되는 자

다. 국내외 주요항공사 비행경력 15년 이상으로 기장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19.12.27.>

2. 조교수<개정 2012.10.31 >

부교수 직위부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자

3. <삭제 2012.10.31>

4.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의 직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 직전 전적대학에서의 현 직위만 인정한다. <개정 2019.8.26>

5. 특별채용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직위부여는 상기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

6. <삭제 2018.3.1>

**제13조 (경력 년 수의 계산)** 전임교원의 경력 년 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6>

1.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은 그 하나만을 인정한다.

3. 임용 경력 년 수를 환산함에 있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 기간은 3년,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기간은 2년까지 이를 인정하며,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기간과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본 대학 교원 경력 환산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9.8.26>

**제14조 (제출서류)**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6>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임용경력 년 수)**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및 교육 년 수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0.31.,2019.8.26>

1. <삭제 2012.10.31>
2. 조 교 수 : 5년
3. 부 교 수 : 11년
4. 교 수 : 16년

제 2 절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

**제16조 (재임용, 승진, 승호봉 및 승급의 정의)** ① 계약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직위로 계속 재계약 임용하는 것을 재임용이라 한다.

② 현 직위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가 도래되어 상위 직위로 계약 임용되는 것을 승진이라 하며, 최소조기승진년수가 도래되어 상위 직위로 조기 계약 임용되는 것을 조기 승진이라 한다. <개정 2009.2.2., 2015.2.3.>

③ 호봉이 상위 호봉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호봉이라 한다.

④ 동일 직위 내에서 상위 직급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급이라 한다.<신설 2017.3.1>

**제17조 (재임용 및 승진)** ① 재임용 및 승진은 매년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임용한다.<개정 2015.2.3>

② 신규임용된 전임 교원의 최초 계약임용 만료에 따른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단,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인정받은 조교수의 재임용년수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5.2.3.,2019.8.26>

③ 승진직위별 최소승진소요년수, 최소조기승진소요년수, 임용년수는 다음과 같다. 단, 정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별표6>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정교수로 승진할 시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신규임용 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인정받은 조교수의 최소승진소요년수 및 최소조기승진소요년수는 각각 2년을 감하여 4년 또는 3년으로 정한다.<신설 2015.2.3, 개정 2024.7.29>

승진직위	최소승진 소요년수	최소조기승진 소요년수	임용년수
정교수	5년	4년	정년
부교수	6년	5년	5년

④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경우,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 조교수 2년으로 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정량기준을 미충족했을 경우, 재임용년수는 부교수 3년, 조교수 2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내 승진에 필요한 정량기준을 미충족할 경우(승진하지 못한 해당 기간만큼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별 연간 점수 및 교육 의무점수를 추가달성해야 하며, 연구 의무점수는 추가달성의 의무가 없음) 재임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5.2.3, 본항 전문개정 2023. 5. 8>

⑤ 승진 임용이 되지 않은 전임교원은 6개월 단위로 승진을 재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5.2.3., 2017.11.2., 2019.8.26., 2019.12.27>

- ⑥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실적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정성평가심사내규에 따른다.<개정 2016. 1. 12.>
- ⑦ 재임용 및 승진 대상자의 제출서류, 심사절차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 1. 12.>
- ⑧ <삭제 2016. 1.12 >
- ⑨ 재임용 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이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재임용 한다.
- ⑩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⑪ 정년까지 임용되는 전임교원의 정수는 전체 재직교원의 100분의 70이내의 수로 하되, 당해 전임교원 총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 ⑫ <삭제 2016. 1.12 >
- ⑬ <삭제 2016. 1.12 >
- ⑭ <삭제 2016. 1.12 >
- ⑮ 비정년트랙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2.3., 2023.5.8>

**제18조** (승진, 승호봉 및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 승호봉 및 승급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7.26., 2017.3.1>

- 1.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최초 계약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승진, 승호봉 및 승급 소요기간에 다음 각 목의 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13.7.26., 2017.3.1., 2024.7.29.>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 본 규정 제 47조의 2(경고)에 따라 경고를 받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진, 승호봉 및 승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19.8.26>

**제19조** (승호봉 및 직급별 소요기간) ① 전임교원은 13호봉까지는 매1년마다 승호봉 되며, 12호봉부터는 매2년마다 승호봉됨을 원칙으로 하되, 승호봉 여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단, 비정년트랙교원은 승호봉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7.3.1.> <개정 2019.8.26>

② 전임교원의 직급별 소요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3.1.> <개정 2019.8.26>

제 3 절 교원업적 평가

제20조 (교원업적평가) ①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원업적평가의 시행시기, 적용시기 및 평가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6>

② 전임교원의 임용심사 시에는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개정 2019.8.26>

③ <삭제 2009.2.2>

제 3 장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정 2015. 2.3.>

제21조 (교원인사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교원임용추천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 1. 12.,2019.8.26>

② <삭제 2016. 1. 12.>

③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관 제5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규정 제 22조 내지 제28조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2015.2.3.>

제2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심의규칙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7.26.>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31>
2. 총장이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및 교무위원 등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23.>
3. 강사 및 비전임교원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3.7.26.><개정 2019.8.26>
4. 교원업적평가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26.>
5. 교원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신설 2013.7.26.>
6.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
7.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3.12.23.>
8.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따른 재심에 관한 심의 <신설 2019.8.26>
9. 강사의 재임용에 따른 재심에 관한 심의 <신설 2019.8.26>

② 인사위원회는 전항 제1호에 의한 임면 동의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의거 심의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삭제 2019.8.26>

**제22조의 2** (심의사항 통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모든 징계관련 심의결과는 법인사무국으로 통보한다.[조문 신설 2013.7.26.]

**제23조** (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 구성은 본 대학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2013.12.23.>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2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인사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2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 4 장 복 무

**제29조** (교원의 책임강의시간) ① 정년트랙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고 한다)은 학칙 제6조에 따른 학년도별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주당 15시간(매 학기 학부 이론교과목 강의 3시간 포함)에 해당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간은 연간 주당 1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2.2., 2013.12.23., 2015.2.3., 2018.3.1., 2018.10.22., 2019.8.26., 2024.11.4.>

② 책임시간은 보직수행 등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강의료지급규정』에 명시된 책임강의시간 및 학부 책임강의시간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2013.12.23.,2015.2.3.,2018.3.1.,2019.8.26.>

③ <삭제 2015.2.3.>

④ <삭제 2018.10.22.>

⑤ <삭제 2024.11.4.>

⑥ 책임시간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2개 학년도 이내에 반드시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6.>

⑦ 연구년, 퇴직 등 사유로 매 학년도 중 1개 학기만 강의를 수행하는 교원의 책임시간은 「강의로 지급 규정」 <별표2>에 명시된 연간 기준 책임시간의 절반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4.11.4.>

**제30조 (출장, 파견 및 연수)** ①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등을 위한 출장, 파견 및 연수를 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6>

② 전임교원의 출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출장, 파견 및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6>

**제31조 (연구년)** ①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연구년제를 시행한다. 단,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서는 연구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2.3.,2019.8.26>

②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연구년제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복귀)** 전임교원은 연구년, 출장, 파견 및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복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제33조 (겸직)** ① 전임교원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8.26>

② 대학의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5 장 신분보장

**제34조 (정년)**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개정 2019.8.26>

**제35조 (휴직의 적용대상)** 본 규정 제 36조 내지 제 38조 및 제 41조 내지 제 42조의 휴직

관련 사항은 전임교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3.12.23.,2019.8.26>

**제36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정관 제 45조 내지 제46조를 따른다.<개정 2013.12.23.,2019.8.26>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및 복직)** 휴직 교원의 신분 및 복직은 정관 제47조를 따른다.<개정 2013.12.23.>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휴직교원의 처우는 정관 제48조를 따른다.<개정 2013.12.23.>

**제39조 (복직)** <삭제 2013.12.23.>

**제40조 (직위해제)** 전임교원의 직위해제는 정관 제49조를 따른다.<개정 2013.12.23.,2019.8.26>

**제40조의 2 (면직의 사유)** 전임교원의 면직사유는 정관 제49조의 2를 따른다.

[조문 신설 2013.12.23.]<개정 2019.8.26>

**제41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정관 제51조에 따라 교원의 의사에 반한 휴직 또는 면직 등의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3.>

**제42조** (휴직의 절차) 교원의 휴직은 학부(과)장, 학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제청한다.<개정 2016. 1. 12.>

**제43조** (명예퇴직) ① 임면권자는 정년트랙 교원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인 날에 자진하여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2.2., 2013.12.23. 2015.2.3.>

②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52조를 따른다.<개정 2013.12.23.>

## 제 6 장 보수, 특별 성과 및 징계<개정 2015.2.3.>

**제44조** (보수) 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교원성과연봉제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5.2.3., 2017.3.1.,2019.8.26>

**제45조** (포상)①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나 업적이 있는 전임교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② 전임교원의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26>

**제46조** (특별성과 지원) ① 전임교원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성과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2.2.,2019.8.26>

②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특별성과지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2.2.>

**제47조** (징계) ① 총장은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19.8.26>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변조, 기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성희롱·성폭력, 기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전임교원의 징계는 정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를 따른다.

[조문 개정 2013. 7. 26] <개정2019.8.26>

**제47조의 2**(경고) ①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이 서면 경고할 수 있다.

1. 징계사안이 경미하여 견책미만의 징계 처분이 예상되는 때
2. 업무 수행 상 보직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 한 때
3.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 및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때

- ② 경고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하며, 경고 효력기간 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제47조에 의거 징계 제청한다.

[조문 신설 2013. 7. 26.]

##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현재 재임 중에 있는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 계산은 당초 임용일자로부터 계산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심사적용 경과규정) 1998. 3. 1일자 교수직위 기간제 임용 자 및 1998. 4. 1일자 교수직위 승진 자는 교원정년보장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년보장임용심사 규정 및 정년보장임용 심사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임용직위)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규정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2항의 조기승진제도는 2009년 9월 1일 이후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3.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16.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 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 재임용, 승진, 승호봉 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임용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7.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2016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 재임용, 승진된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016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임용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7.3.1>

### 직급별 소요기간

직위	직급	2017.2.28. 이전 임용교원	2017.03.01. 이후 신규임용교원
교수	P1	교수 1~3호봉	퇴직시까지
	P2	교수 4~6호봉	7년
	P3	교수 7~10호봉	7년